

## 창설자의 7가지 근본 이념

창설자 안드레아스 암라인 신부의 '외방 선교(포교)를 위한 베네딕도회 소속 수도원'의 창설의지를 담은 청원서에는 그의 일곱 가지 근본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근본 사상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창설자의 선교 열정이 만나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설자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독일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과 함께 1882년에 작성하고 1921년에는 출판된 그의 '일곱 가지 근본 이념'을 소개한다.

### 시대적 상황

당시 독일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주의를 따르며 신비 생활과 초자연적 생활을 강조하는 가톨릭교회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가장 열렬히 가톨릭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을 더욱 공격하곤 했다. 교회 내의 일부 주교, 사제들까지 수도원의 수요가 너무 많아 사목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였고, 암라인 신부와 마찬가지로 레겐스부르크의 교구장은 정부의 **수도원 설립 금지령**을 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교 활동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어 후원 의지는 있었다. 다만 **포교 활동을 수도자가 아닌 일반 성직자와 평신도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19세기 말의 독일은 가톨릭교회보다 개신교가 우세한 위치에 있었고 포교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개신교 평신도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선교 단체를 조직할 수 있었던 반면 가톨릭 포교의 주역은 대부분 수도자들로서 당시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의 '**문화 투쟁**(독일 통일 직후인 1870년대에 비스마르크가 국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反)프로이센적인 가톨릭교도에 대하여 행한 탄압 정책)'으로 가톨릭교회에 대한 억압이 컸다. 특히 수도원 설립 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쌍트 오티리엔 수도자들 역시 초기에는 독일이 아닌 로마에서 은밀히 서원을 발해야만 했다.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통일을 염원했고 이를 위해 가톨릭교회가 국가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를 로마와 단절시켜 국가의 지배 아래 두려는 목적으로 '5월법'을 공포했고 여기에는 성직자의 양성과 임명, 교회의 재판권 관장 등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고 수도회 폐쇄(간호 업무 종사 수도회만 제외), 성직자의 재산 몰수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안드레아스 암라인 신부가 처음 수도회를 창설하고자 할 때 명칭을 '해외 포교를 위한 독일 신학원', '아프리카 내륙 지방을 위한 가톨릭 포교 조합', '라이헨바흐 해외 포교 신학원'이라 했던 것이다.

또한 19세기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변질된 민족주의가 합쳐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후진국을 경제적으로나 무력으로 식민지화하거나 침략하는 **제국주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대외 팽창을 꾀하며 식민지 획득에 열을 올렸다**. 1871년에 통일된 독일은 비교적 늦게 식민지 획득에 나섰고 교회와 정부에서는 식민지에 대한 포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안드레아스 암라인 신부는 동 아프리카(현 탄자니아)에는 빨리 선교사를 보내지 않으면 개신교에 의해 독점될 상황이었기에 제대로 양성되지도 않은 수도자를 부랴부랴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의 베네딕도회적 수도 생활 양식과 포교에 대한 열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시대적 역행으로 그의 사상 안에는 식민 정책의 사고 방식이 근본사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즉 미개인에게 문명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교 문화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었다. 이 때 실지로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교 문화는 유럽 문화였다. 안드레아스 암라인 신부는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수도회 설립을 시도하면서 국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수도회의 명칭과 생활 양식을 구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베네딕도회 수도승의 생활 양식을 따랐다.

외방 선교(포교)를 위한 베네딕도회 수족의 수도회 창설을 위한 청원서 내용에 나타나는 창설자 안드레아스 암라인 신부의 일곱 가지 선교 이념을 요약해 본다.

### 첫째 근본 사상 : 동기와 목적

베네딕도회의 새 수족 회원들은 수도자(수도승)로서의 소명을 완전히 이행함과 동시에 외교인들 사이에서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도적 소명을 실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당한 준비를 한 다음 장상에 대한 순명 하에 파견된다.

암라인 신부는 보이론 관상 베네딕도회 수도자였기에 선교를 지향하면서도 베네딕도회 고유의 관상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사도적 활동을 위해 창설된 수도회들 보다 봉쇄와 규율이 엄격한 수도승적 생활 양식을 택해 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 회를 곧잘 ‘반(半)관상회’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어폐가 있다. 사실 반관상회는 없다. 그러나 다른 활동 수도회보다 관상적인 면의 수도 생활에 더 깊이를 두는 것은 사실이다. ‘Ora et Labora(기도하며 일하라)’, 이 모토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관상과 활동의 조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나아가야 하는 소명을 받은 것이다.

### 둘째 근본 사상 : 전통적이며 규칙에 충실한 베네딕도회의 포교 방법

성 베네딕도의 규칙과 선교의 전통에 따라 선교지방에서도 공동으로 바치는 성무일도를 다른 어떤 것보다 첫째 자리에 둘 것이다. 따라서 베네딕도 회원의 수도 소명은 본국에서 뿐만 아니라 포교지에서도 공동체를 이루는 수도원을 먼저 형성하고, 수도원은 그 지역 전체를 위한 은총의 중심, 복음화의 원천이 되며, 선교사 자신을 위해서도 고통과 위험 가운데서 안식처가 된다.

암라인 신부는 ‘충실하게 지키는 수도 소명은 선교 소명을 승화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복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포교 수도원이 단일 수도원보다 유익한 점 두 가지를 아래와 같이 본다. 첫째, 작은 불꽃이 하나씩 타는 것보다 수많은 불꽃이 한데 뭉쳐 타오를 때 힘이 있듯이 공동 기도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의 불꽃은 더욱 더 뜨겁게 타오를 것이며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친히 기도의 효과를 더 크게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다. 둘째, 포교 수도원 본원과 거리가 너무 멀 경우 본원을 설립하는데 이 본원은 수도원에 소속되어 선교사나 기타 필요한 일체의 것을 지원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셋째 근본 사상 : 수도원의 구성

수도원의 구성은 서원자, 수련자, 수도원에서 공부를 하는 학도(지원자)의 세 부류로 되어 있다. 장상이 지원자를 받아들일 때에는 규칙서에 기록된 입회자의 동기와 그 정신에 부합한 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입회자는 외방 선교의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한다. 남자 수도원의 경우, 가대 서원자(사제 및 신학생)와 평 수사로 구분(노동에 종사)된다.

### 넷째 근본 사상 : 선교사의 협력자인 평수사

수도회의 창설자는 성령께서 직접 사도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포교 베네딕도 수도회에서도 실행해야 한다. 즉 열심한 평신도(종교 교육을 받은 이들)를 받아들여 수도승으로 훈련하고 수도성소 및 선교적 업무를 위하여 교육해야 한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로 가득 차고 여러분에게 신망을 받는 사람을 뽑아내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에만 힘쓰겠습니다.(사도행전 6,2-4)” 평수사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선교사를 지원하면 복음과 그리스도교적 문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다.

### 다섯째 근본 사상 : 수도 사제와 수사의 관계

성 베네딕도의 규칙에서 수도 사제와 평수사의 신분은 모두 차별없이 평등하다. 사부 성 베네딕도께서는 한 수도 가족은 모두가 같은 형제로서 서로 존경하고 가르치도록 가르치셨다.

수도 사제와 수사는 하느님의 사명을 함께 완수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내적인 신앙 관계에 있어서도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일하며 살아가야하므로 하나로 된 규칙 아래에서 교육되고 훈련된다. 따라서 계급의 차별이 없고 평등하며 평수사는 신앙의 눈으로 사제가 하느님께로부터 권리를 받은 자임을 인식하며, 수도 사제 역시 평수사와 동료이며 형제적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여섯째 근본사상 : 외방 선교 사업에 관한 중요한 원칙

우리 수족은 포교 지역에서 많은 이들의 개종과 교육을 위한 포교 사업에 투신하며, 특히 포교 수녀들을 위한 수녀원을 세워 여성 교육을 담당하게 하고 그리스도교적으로 개화된 생활을 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포교 수녀원은 포교 문제에 관하여 교구장에게 순명해야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수녀원의 장상과 그 회의 규율을 따를 것이다.

### 일곱째 근본사상 : 미래의 모든 것을 다음의 원칙으로 종합

위의 근본 사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면 또한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일치되는 것이라면 성령의 도움을 청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 주시도록 '청원서'의 형식으로 포교성성에 제출할 것이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결정한 것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함과 동시에 하느님의 강복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